

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1년 12월 8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9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js9695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귀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.

발 의 자 : 김귀근, 성복임, 장경민,
이전행, 홍경호, 신금자,
이길호, 이희재, 이우천

1. 제안이유

-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,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(안 제57조)
- 나.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(안 제58조)
- 다.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(안 59조)
- 라.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입주자 등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60조)

3. 관련법령

- 해당없음

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(제57조부터 제61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층간소음 방지

제57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
2.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
3.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및 안내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

제58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59조(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) ① 입주자 등은 자체적으로 층

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
2.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
3.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
4.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,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
5.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
6.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

제60조(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입주자 등의 권리와 책무) ①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.

②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층간소음 발생 저감 노력을 하고 이웃을 배려하여야 한다.

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1조(관리규약의 명시) 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 공동

주택 관리규약에 포함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제6장 층간소음 방지</u> <u>제57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</u>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.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.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및 안내 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 <u>제58조(실태조사)</u> ①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59조(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) ① 입주자 등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
2.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
3.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
4.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,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
5.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
6.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

<신 설>

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

제60조(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입주자 등의 권리와 책무) ①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.

②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층간소음 발생 저감 노력을 하고 이웃을 배려하여야 한다.

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61조(관리규약의 명시) 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